

서울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6나200677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

###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6나200677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가합502362 판결

###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C

변론 종결 2016. 9. 23.

판결 선고 2016. 10. 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가합502362 판결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2014. 1.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47,934,980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또는 거듭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에 기재된 "피고 주식회사 A"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로 고쳐 쓰고, 그 이후에 기재된 "피고 회사"를 모두 "A"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에 기재된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고쳐 쓰고, 그 이후에 기재된 "피고 B"을 모두 "B"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 이후에 기재된 "피고 C"을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2.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을 "2. 피보전채권의 성립"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4행과 제17행의 각 "피고 H"을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2006. 8. 28. B의 부탁으로 A에 3억 원을 이자 월 1% 정도로 정하여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그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적을 때는 3억 원에서 많을 때는 9억 원 정도의 돈을 A에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아 오던 중 2013. 말경부터 이자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당시 B의 채무상황을 알 수 없었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B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와 B 사이에 피고가 2007. 9. 27. B에게 3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다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3. 6.부터 2011. 11. 8.까지 B 또는 A와 수차례에 걸쳐 자금 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밖에 지나지 않은 2014. 1. 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발생 당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서에서, B와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관계라고 진술한 점 및 ③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3. 말경부터 이자 지급이 지체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B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

답변서에서 피고 스스로도 그 무렵 B 또는 A의 자금 사정이 많이 안 좋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B에 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고의영

판사양환승

판사최영은

별지